

## 결과보고서

<b>사업기관</b>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b>사업명</b>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과 자료집 발간		
<b>사업책임자</b>	<b>성명</b>	<b>소속</b>	<b>직위</b>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사업기간</b>	2020.3.1.~2021.2.28	<b>사업비</b>	

### 1. 추진 배경, 목적, 기대효과

- 남북한 법률체계의 비교를 통한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적 기준 도출
- 남북관계개선을 대비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준비
- 남북법제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북한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
-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방향 설정
-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을 위한 준비작업
-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정비를 위한 지원
-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2. 사업 내용

- 북한법 각론에 대한 분야별 연구사업 추진
- 통일법 관련 학술기관과 교류 및 공동연구
- 학제 간 융합을 통한 국내 학술대회 개최
- 정기세미나, 북한법 관련 자료집 등을 통해 통일법학자 양성 기반 마련

### 3. 사업 성과

- 학술대회(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 학술대회(공동, 북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체계)
- 통일법 정기 세미나
-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제15호 및 제16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과 자료집 발간
- 기관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 □ 추진 배경 및 목적

- 남북한 법률체계의 비교와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적 기준 도출
  - 2000년 이후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이는 남북관계의 단절로 연결되었음. 남북한의 법제도는 그 이념과 체계가 상이하어 남북관계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외적인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법제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
  -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남북관계가 법치국가의 틀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되어야 함.
  - 북한법을 분야별로 북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남한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남북관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학제 간 연구성과의 공유와 교류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 배양
  - 남북한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것은 법학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제적 요구사항임.
  -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야에서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남한법과 비교함

으로써 다른 학문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연구하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통일법 연구성과의 확산과 통일법 전문가의 육성

- 통일법제는 다른 법학분야와 달리 단독적이고 고유한 규율영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법제도와 관련되어 연구가 필요한 학문임.
- 통일법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학분야 내에서의 다양한 전공과 연계된 연구와 사업이 필수적인데, 북한법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연합적 학문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음. 통일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성과를 학술지와 자료집으로 발간함으로써 통일법의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함.

### □ 기대효과

####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 법제도 도출

-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남한법과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교류협력의 관계에서 북한법을 적용할지 여부, 그 경우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이나 북한의 일방적 관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에서 북한이 갖는 현실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음.

#### ○ 북한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정비 역량 강화

- 그 동안 북한법에 대해서는 정보의 미비, 법현실의 불확실성 등으로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논의만 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법의 각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요구됨. 2016년 북한이 법전 증보판을 발생하면서 총 18개 분야별로 부문법을 체계화한 것에 유의하여 그에 대응되는 남한법과 비교법적 연구를 추진하여 북한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작업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재개되었을 경우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법률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남북한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약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남북교류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별로 남북한의 법률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다른 학문분야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는 다시 법체도의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은 학제 간 연구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법학 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학교 이외의 법학실무가들을 참여시켜 공동연구와 사업을 추진함.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호간의 교류는 남북통일을 위한 일련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통일법 전문가 육성과 통일법제에 대한 중장기적 이정표 제시

- 통일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젊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사업에 참여시키고 분야별로 발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법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업은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에는 북한의 법제정비작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사법과 법률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방향과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사업 내용

### □ 북한법 각론에 대한 심층적 연구 수행

- 북한법의 총 18개의 분야 중, 주권부문, 행정부문, 형사부문, 민사부문, 재판부문, 인민보안부문, 계획부문, 노동부문, 재산관리부문, 보건부문에 대해 그 동안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남한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이 연구는 북한의 부문법 총 238개 중에 총 59개의 법률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개별 부문법을 분석하고 남한법과 비교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각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연구사업에는 정구진(서울대 박사), 박종원(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현창(인천지검 검사), 이상협(변호사), 강민식(육군3사관학교 교수) 등 총 10명의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성과를 자료집으로 발간(2월 중 발간 예정, 이 부분은 연구중점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하고 차질없이 연구를 진행하였음).

#### □ 다양한 학술기관과 교류 및 공동연구

- 통일법에 대해 유관기관과 학술대회, 공동세미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연구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였음.
- 한국법제연구원과 ‘남북접경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국회와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최근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음.
- 당초, 학내외의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사업도 구상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준비나 협조가 잘 진행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 □ 학제 간 융합을 위한 국내 학술대회 개최

- 통일부와 공동으로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사법체계 관련 법제, 북한의 주요 행정관련 법제를 발표하였음(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북한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체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북한 행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한 검토, 북한헌법상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에 대해 발표하였음(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음).
- 이외에도 법무부와 통일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일법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한 헌법학자대회에서 참여하여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국회회담자문회의에도 참여하였음.

#### □ 정기세미나 등 통일법학자 양성 기반 마련

- 남북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신진학자의 양성이 필수적인데, 통일법을 전공한 석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음.
- 학술대회 이외에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통일법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 북한헌법의 개정현황, 중국의 일국양제에 관한 법적 쟁점, 남북한 공무원제도 비교, 통일과정의 재판절차, 북한주민

의 국적에 관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 통일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학술지 ‘헌법과 통일법’ 제15호와 제16호를 발간하여 통일법과 남북관계와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소, 단체 등에 배포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음.
- 특히,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하였던 ‘통일법강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회 연기하다가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음(2021년 사업에는 비대면 화상강의를 통해 2학기에 걸쳐 실시할 예정임).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7. 20.	‘헌법과 통일법’(학술지) 제15호 발간
10. 22.	통일법전문가 간담회(법무부)
11. 2.	통일법 아카데미 특강(법무부, 대한변협 공동주최)
11. 4.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 발표(한국헌법학자대회)
12. 9.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12. 14.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12. 23.	‘북한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체계’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12. 29. - 2021. 2. (총 5회)	통일법 연구 정기세미나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소(원)	국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헌법·통일법센터	02-880-2608		leewon35@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한동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	waterstate@hanmail.net
박미선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misun.park97@gmail.com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kujin82@gmail.com
강민식	육군 3사관학교	교수	kwno1@snu.ac.kr
전령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cnpul@snu.ac.kr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skaredis@gmail.com
이상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amuelshlee133@gmail.com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aufhebung@hanmail.net
송창성	헌법재판소	연구관	cssong@ccourt.go.kr
이동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ldkpower@snu.ac.kr
윤형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yoons@snu.ac.kr
이은영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	6513986@hanmail.net
이재희	남부지검	검사	jlee1004@snu.ac.kr
전세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orthodsy@naver.com
장소영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soyoung1028@spo.go.kr
한철용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charleshide@hanmail.net

### 3. 사업 성과

#### □ 학술지 발간 : 헌법과 통일법 (6월 및 12월, 총 2회 발간)

##### ※ 운영성과

- 헌법과 통일법 제13호(2019. 6월)
  - 연구논단 : 4편
- 헌법과 통일법 제14호(2019. 12월)
  - 연구논단 : 4편

##### ※ 관련 분야 기여도

- 헌법과 통일법 제15호
  - 남북한 에너지, 자원 관련 법률비교를 통한 평가와 시사점
  -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
  -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 따른 개선입법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
- 헌법과 통일법 제16호
  - 남북한의 형식적 민법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사점
  - 북한의 해사소송관계법의 분석과 남한 해사법원 설치
  - 남북한 보건의료분유의 법령 비교
  - 북한 법제정법에 대한 연구(남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학술대회 :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20. 12. 14.)

##### ※ 운영성과

- 총 2개 세션, 총 5개 주제 발제 및 토론
- 분야별 북한법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토론
- 발제자 : 총 10명, 토론자 : 총 5명

##### ※ 관련 분야 기여도

- 남북한 법적 이념과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북한의 사법관련 법제 분석(재판소, 검찰소, 변호사제도 비교)
- 북한의 민사제도와 형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북한의 주요 행정조직과 제도에 대한 분석
- 남북한 보건, 의료 관련 법령의 비교



## □ 통일법 정기세미나('20. 12. 29. ~ '21 . 2. 9.)

### ※ 운영성과

- 통일법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 연구
- 통일법을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다른 연구기관 관련자도 참여(총 6회 개최)
- 발표자 : 총 11명, 토론자 총 10명

### ※ 관련 분야 기여도

- 최근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평가
- 북한의 최근 헌법개정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와 방안
- 남북한 공무원제도의 비교와 분석
- 남북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재판절차의 정비방안
- 북한주민의 국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 자료집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1)' 발간('20. 2. 예정)

### ※ 운영성과

- 2020년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1)'을 자료집으로 발간(2021. 1.말 현재 원고 취합 완료, 2021. 2.중 자료집으로 발간, 향후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 시리즈로 책자로 발간 계획)
- 북한법의 개별 부문법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집으로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여자 : 총 12명, 북한법 총 19개 부문 중, 6개 부분을 분석, 정리

### ※ 관련 분야 기여도

- 북한법의 이론적 기초와 법률체계 이해
- 북한헌법의 체계적 분석
- 북한 주권부문에 대한 법제도 분석
- 북한 행정부문에 대한 법제도 분석
- 북한 형,민사부문에 대한 법제도 분석
- 북한 계획,노동,재산관리부문에 대한 법제도 분석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사업평가

#### ○ 사업의 적절성

-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괄목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사업목표와 실제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관성에 입각하여 시행하였으며, 새로운 분야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북한법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 사업의 효율성

- 정기간행 학술지, 학술대회 자료집, 연구결과 원고 등은 통일기반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결과물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하였으며, 학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 심층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음.
- 통일부,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계속하면서 상호 현안문제나 중장기적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법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
- 특히, 학자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종사하는 신진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법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각 관련 분야의 연구영역으로 확장하였음.

#### ○ 사업의 영향력

- 2차례의 학술대회, 5차례의 정기 세미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일법과 관련된 연구지속력을 향상시키고 헌법통일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였음. 이는 단순 관심정도에서 심도깊은 연구의 범위로 확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
- 특히, 연 2회 발간되는 학술지(헌법과 통일법, 총 16호 발간)은 순수 통일법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보다 알찬 결과물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실제,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 등 주요 기관에 해당 자료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기관

은 자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등 통일법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통일을 위한 주요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과 시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영역의 확대가 요구되며,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한 실무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통일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남북 법제도의 비교와 남북 교류재개를 위한 연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충분한 연구와 대비없이 한반도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통일부 등 남북관계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법률적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 남북관계 개선시 폭발적인 연구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의 학술대회, 정기세미나, 공동연구 등은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통일법과 관련한 연구성과의 장이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신진학자들의 연구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학술세미나 및 월례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의 최종결과물로 나타나는 학술지 「헌법과 통일법」 반기단위 연구성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로 질적·양적인 확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전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정에 대폭 차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와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매학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통일법 강좌’는 1학기 내내 연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2학기에도 진행하지 못하였음.
- 이는 학부학생들에 대한 강좌신청, 외부의 강사섭외, 온라인을 통한 화상 강의 시스템 구축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는데, 통일법센터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기를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2021년 사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예정임.
- 2019년 새롭게 시도한 세부사업(통일법 논문현상공모)은 시행결과 양질

의 우수한 논문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 홍보 기간, 논문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여 높은 수준의 논문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이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의 사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과제와 주제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재점검하여 추진할 계획임.
- 특히, ‘통일법 강좌’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정비, 외부강사의 협조, 주제선정, 수수료증 발급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2021년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 6. 성과 관련 지표

#### □ 대표 사업 실적

-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제15호 및 제16호)
- 통일법제 인프라구축 학술대회
- 통일법 정기 세미나 개최
-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1) 발간(향후, 시리즈 형식의 책자로 발간 예정)

#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 1

2020. 12.

+82-2-880-1869  
cnpul@snu.ac.kr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남북한은 2018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기본적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국민은 모두 이를 위해 노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법 대해서는 정보의 미비, 법현실의 불확실성 등으로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논의만 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법의 각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요구됩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남북관계가 법치국가의 틀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통합과 사법통합을 실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법을 연구하는 것은 북한학과 통일학뿐만 아니라 평화학의 분과로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한법이나 북한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관계이지만, 북한법은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체계가므로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남북합의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는 2020년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하여 북한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통일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석된 북한법을 각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북한법전에서 분류하는 체제에 따라 행정부문을 비롯한 주요 부분법을 분석하고 남한법과 비교하였습니다. 남북한의 법률체계는 서로 달라 평면적으로 치환하여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부문법의 내용을 학문적 차원

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과 통일법을 전공하는 다수의 박사, 수료생,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2020년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연구성과이며, 이 사업을 지원해주신 통일평화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 1’에 이어 내년에도 나머지 부문법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추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집을 축적하여 최종적으로 북한법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책자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집인 통일법은 물론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12.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 1

## 목 차

---

행정 부문 .....	• 1
민형사 부문 .....	• 57
재판, 인민보안 부문 .....	• 269
계획, 노동, 재산관리 부문 .....	• 345
보건의료 부문 .....	• 435



# 행정 부문

## 북한행정 부문 (이상협)

- 금수산태양궁전법
- 평양시관리법
- 법제정법
- 주민행정법
- 공무원자격판정법

## 북한행정 부문 (유성욱)

- 행정구역법
- 신소청원법
- 기밀법
- 문헌법
- 공인법

# 민형사 부문

## 북한 형법 (강민식)

- 북한 형법 총론
- 북한 형법 각론
- 북한 형사소송법

## 북한 민법 (김정길)

- 북한 민법
- 북한 민사소송법

## 북한 민형사 부문 (박종원)

- 북한 형민사감정법
- 해사소송관계법
- 가족법
- 상속법
- 손해보상법
- 대외민사관계법

# 재판 인민보안 부문

## 재판, 인민보안 부문 (김현창)

- 행정처벌법
- 재판소구성법
- 공증법
- 변호사법
- 검찰감시법
- 판결판정집행법
- 중재법

## 재판, 인민보안 부문 (정구진)

- 인민보안단속법
- 공민등록법
- 도로교통법
- 소방법
- 총기류관리법
- 화약류취급법
- 독성물질취급법
- 폭발물처리법

# 계획, 노동, 재산관리 부문

## 북한 계획, 노동, 재산관리 부문 (김은정)

- 인민경제계획법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법
- 사회주의노동법
- 노동정량법
- 노동보호법

## 북한 계획, 노동, 재산 부문 (김완기)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기업소법
- 가격법
- 통계법
- 자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부동산관리법
- 물자소비기준법

# 보건의료 부문

## 북한 보건의료 부문 (전세영)

- 인민보건법
- 의료법
- 공중위생법
- 식료품위생법
- 전염병예방법
- 의약품관리법